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2021. 4.



재단법인

**KMDF**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Korea Medical Device Development Fund

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2021. 4.

본 가이드라인은 「(재)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연구 개발사업의 성과물 귀속과 관련하여 주관·참여기관에게 업무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사항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사업단 연구성과의 소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저작권은 (재)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 있으며, 사업단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하거나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요 약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 ✓ 가이드라인 개요
- ✓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원칙
- ✓ 공동소유 및 개인명의 특허출원 관련
- ✓ 기타



## ✓ 가이드라인 개요

- 본 가이드라인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관련된 업무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됨
- \*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혁신법 제2조 제5호)

## ✓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원칙

- (관련법령)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연구성과를 창출한 개발기관 소유가 원칙”임
- (개발기관 소유의 원칙)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성과물을 창출한 “연구자”가 해당 성과(직무발명)를 원시취득하고, 기관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법리(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름
  - \* 다만, 기관에서 원시취득한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 승계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기관 공동소유”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허용범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근거(기관의 미승계, 포기 등의 의사결정)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 공동소유 및 개인명의 특허출원 관련

- (공동소유)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협의에 따라 공동소유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위탁기관 성과물 소유) 위탁기관에게 연구개발을 발주한 발주처(주관·참여기관)가 연구성과물을 소유함
- (기여도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여도 산정기준에 따라 소유비율을 정하도록 함
  - \* 초기 연구개발협약서에 기여도 산정기준 제시하는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거나, 공동출원계약서 등에 공유자간 기여율의 근거가 되는 비율 명시
- (연구자 개인소유)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성과는 개발기관 소유이나, 연구개발기관이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연구자 소유 가능
- (개인소유 가능)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 연구자 개인의 자유발명으로 귀속됨
  - \* 다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관의 미승계 또는 권리 포기 등의 심의로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 기타

- 연구개발성과의 공동소유 관련 공동출원계약서 및 기여도 산정에 대한 샘플을 제안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 관련 사례에 대해 Q&A 형식으로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Contents

목차

## I. 개요

1. 연구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개요	14
2. 용어의 정의	15

## II. 국가R&D 연구성과 소유 원칙

1. 국가R&D 성과의 귀속 기준 (개발기관 소유 원칙)	22
2. 주관·참여기관 간 성과의 귀속관계	24

## III. 국가R&D 성과의 공동소유

1. 공동 연구개발의 성과소유 원칙	28
2. 특허 공동출원 관련(공동출원계약서 및 기여도)	30

## IV. 연구자 개인명의 특허출원 관련

1. 관련 법령 및 규정	36
2. 연구자 개인명의 특허 관련 이슈	40
3. 연구개발기관의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	46

## V. 참고자료

[별첨1] 공동출원계약서 및 기여도 산정 예시	50
[별첨2] 국가R&D성과 귀속 관련 Q&A	55
[별첨3] 기타 전문기관 관련 규정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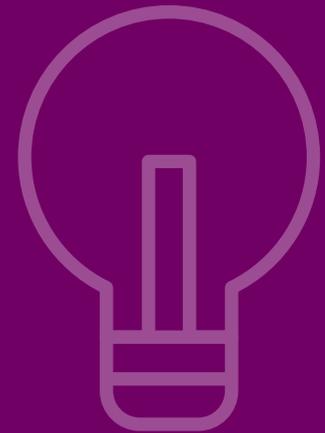


# I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개 요

✓ 연구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개요	14
✓ 용어의 정의	15



## ✓ 1. 연구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개요

### 가이드라인 목적

- 「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에 대해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소유관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무안내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

- 본 “사업단 연구개발성과물 소유 가이드라인”은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의 소유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사항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사업단 연구성과의 소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 가이드라인의 구성

- 본 “사업단 연구개발성과물 소유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제1장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 원칙이 되는 관련 법령·규정을 살펴 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유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
  - 제2장 :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위탁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원칙을 정립하여 명확한 성과소유 관계를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제3장 :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소유와 관련된 기준을 살펴, 주관·참여기관 간의 성과소유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제4장 :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자” 개인의 성과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살펴 개인소유의 문제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5장 : 기타 참고자료로서, 부처별 전문기관에서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여 과제 수행기관이 정부 부처의 성과소유 관련규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함.

## ✓ 2. 용어의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근거로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R&D) 성과

- 국가연구개발성과는 유형적 성과물 및 무형적 성과물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음.
  - 유형적 성과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 \* “연구노트”는 기재된 노하우, 지식재산권 등의 성격으로 무형적 성과물로 판단될 수도 있음.
  - 무형적 성과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따르면 2가지 유형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 원칙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됨.

- 혁신법 제2조제5호 :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혁신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 혁신법 시행령 제3조 :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化合物), 신물질, 표준 등

I.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4호)

※ '사업단'은 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연구개발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각 부처·기관별 사정 또는 정부 R&D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서도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 '수행기관'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연구개발기관을 의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근거로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로 창출된 특허

### 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9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소유권자

-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한 자를 의미

##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수행 '기관'의 과제 수행으로, 연구자 개인(종업원)이 개발한 성과물은 기관(사용자)에게 승계 귀속됨.(직무발명)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직무발명의 요건

- ① 종업원등의 발명일 것
- ② 종업원등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③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등에게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 직무발명의 소유권 및 권리승계

-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종업원등(발명자)이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사용자등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경우】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되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은 권리승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사용자등은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를 주장할 수는 없음 (단, 사용자등은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보유)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국가R&D  
성과 소유  
원칙

# II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 ✓ 국가R&D성과의 귀속 기준(개발기관 소유 원칙) 22
- ✓ 주관·참여기관 간 성과의 귀속관계 24



## ✓ 1. 국가R&D성과의 귀속 기준(개발기관 소유 원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R&D) 성과 귀속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
  -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 간 계약으로 정하되, 연구개발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은 각자 소유하고, 공동으로 수행한 것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발명의 귀속 및 승계

-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으로써 “발명”은 특허법 상 자연인(연구자)만이 완성할 수 있고,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자연인인 연구자에게 귀속됨 (특허법 제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연구자가 원시 취득한 “연구성과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연구개발수행 기관)에게 승계되어 연구개발기관에게 귀속됨(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규정은, 위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상의 발명의 완성 및 직무발명에 대한 성과귀속 및 승계에 대한 기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소유 및 연구자 개인소유에 관한 기준으로 적용됨.
  -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 승계확인서” 징구 등으로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6) - KISTEP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0.6)”은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관련 舊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동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음.
  - 공동관리규정이 폐지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동 매뉴얼은 개정될 것으로 판단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유·무형적성과 구분없이 단순화하여 개발기관 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다만, 개발기관 소유 원칙은 기존 “공동관리규정”에서도 정해진 바, 성과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혁신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음.
  - ‘혁신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자 소유 또는 연구기관 공동소유가 가능함.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및 舊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6) 제3절(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공동관리규정 제20조) :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 가능
  2. 참여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양여(공동관리규정 제20조) : 연구개발성과 소유 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 기관 우선 고려)에 양여할 수 있음
- ※ 임의 양여(처분)의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의 실시 등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며,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 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유·무형적 성과는 기술료 완납 이전에는 임의 처분 금지

## ✓ 2. 주관·참여기관 간 성과의 귀속관계

###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주관·참여기관 간 성과의 귀속

-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성과는 개발기관 소유의 원칙에 따름
- 다만,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 간의 성과 귀속에 대한 예외로써 혁신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는 바,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 귀속을 정할 수 있음.

### 소 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동법 제16조 제2항은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혁신법 및 KISTEP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은 연구성과의 귀속에 대하여 개발기관 소유 원칙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 다만, 개발기관 소유의 원칙과 달리하는 성과물의 귀속 조건일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소유관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혁신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개발 수행기관 간의 협약 등을 근거로 성과소유의 기본원칙(개발기관 소유)과 달리 정함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의 공동소유”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근거(기관의 미승계, 포기 등의 의사결정)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하 “국가R&D 연구성과의 공동소유” 및 “연구자 개인 소유”와 관련된 사항 검토

국가R&D  
성과의  
공동소유

# III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 |                             |    |
|-----------------------------|----|
| ✓ 공동 연구개발의 성과소유 원칙          | 28 |
| ✓ 특히 공동출원 관련(공동출원계약서 및 기여도) | 30 |



## ✓ 1. 공동 연구개발의 성과소유 원칙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공동소유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2항은,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 등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해 규정
  - 1.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개발기관 소유 원칙)
  - 2.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기여도 및 협의에 따른 공동소유)
  -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주관·참여·위탁연구개발기관의 범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본 과제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연구기관
- 참여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 연구과제를 주관기관과 함께 “참여”하여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영역을 담당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 또는 참여기관(발주처)으로부터 특정 부분의 연구개발을 위탁(용역)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계획서 상에는 연구수행주체로 판단되지 않음

### 1.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개발기관 소유 원칙에 따라, 개발한 연구수행기관이 단독 소유
- 주관·참여기관의 각자 단독 개발한 성과물은 타기관의 관여없이 단독으로 소유·관리하도록 규정
- 연구계획서 상 연구수행 주체로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 창출은 개발기관 소유원칙에 따름

### 2.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함
-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핵심기술별 직·간접적 창출 기여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정하여 기여도 산출
  - 기여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여도 근거자료 마련 필요
  - 다양한 기여도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특허의 경우 공동출원 계약(협약)서 등으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시될 것
  - ※ 공동출원 계약서에는 권리의 지분 출원·등록 유지비용의 분담 및 실시에 따른 기술료 배분조건 등을 기재하고, 기여도 산출은 기관 연구자 간의 기여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예시〕 자료 참조)
-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주관·참여기관 간의 연구협약시 성과소유에 대한 합리적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거나, 실시에 따른 영리적 이익에 대한 기술이전 내지 기술료 등으로 조율 필요

예)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참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동창출 및 공동소유는 비영리기관인 주관기관에게 “실시”에 따른 영리적 이익이 없으므로, 참여기관의 실시에 따른 공동소유(비율)를 협의하되 참여기관의 실시에 따른 영리적 이익을 공유(share)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합리적 방안으로 추진 필요

###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를 창출한 경우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여기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기관을 말하며, 연구과제의 “참여연구기관”이라도 위탁(용역) 발주하여 위탁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다면, “참여연구기관”이 발주자로서 연구성과물을 소유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계획서 상 연구수행주체로서 인정되지 않는 연구기관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특정 과업에 대해 위탁(용역)을 통해 연구개발한 기관이므로, 연구개발성과물은 발주처(주관 또는 참여)에 귀속됨
  - 다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일지라도 연구수행의 주체가 되는 연구개발활동에 기인하여 연구성과물을 창출한 경우, 연구성과물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음
  - ※ 발주처의 과업범위를 넘어서는 연구개발성과물인 경우, 과업 완수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통상의 노력을 뛰어넘는 연구성과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소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2. 특허의 공동출원 관련 이슈

### 국가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의 공동소유 관련 이슈

-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해야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여도 산정기준에 따라 소유비율을 정할 수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또한,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등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르므로, 사전에 연구협약 등에서 소유비율을 정하여 공동출원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창출한 특허에 대한 공동소유 진행 시,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등으로 상호 협약하여 권리관계 및 기여도 산정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소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귀속에 대한 외부 근거자료로서도 필요하지만, 공유자 상호 간의 분쟁 및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연구성과의 창출 기여도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관 간의 형평 타당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하되, 기여도를 증빙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여율 산정표 등을 마련

### 공동소유 특허에 대한 공동출원 계약서 포함 사항

- 공동출원하는 대상 발명의 명칭 기재
- 공유자 간의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 기재
  - 특허출원 절차는 공유자 중 1인이 대표자로 총괄하여 진행하고, 출원 등록에 이르는 절차에서 타 공유자는 적극 협조하는 방식을 채용함
- 대상특허에 대해 수익 발생시 수익 배분에 대한 사항
- 기여율에 따라 산정된 권리의 지분 기재
-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사항으로 해외출원 등에 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공유특허)의 실시 및 허락에 대한 사항
- 성과 소유 및 관리(권리 취득·유지)에 대한 비용 분담사항 등
- 지분 포기 및 양도에 대한 사항
-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사항
- 본 공동출원계약의 유효기간 및 해제·해지에 대한 사항
- 기타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 등 포함

### 공동소유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대한 기여도 산정

- 공동출원 특허에 대한 창출 기여도는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핵심기술별 직·간접적 창출 기여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정하여 기여율 산출
- 연구비 부담비율에 대한 기여도 산정 기준(예시)
  - 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연구성과물 창출을 위해 소요된 연구비를 근거로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비율 산정

### III. 국가R&D 성과의 공동소유

- ※ 해당 연구비 활용이 연구성과물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
- 핵심기술별 연구개발 내용을 근거로 연구성과물에 대한 소유비율 산정
  - ※ 연구개발 수행사항이 각 핵심기술에 대한 비율로 연구자 기준의 기여도 산정
- 공동연구협약에 의거, 공동 연구개발 진행시 연구개발 부분 역할에 대한 기여도 산정

#### 공동출원 계약서 및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대한 기여도 예시

-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기관 간 공동으로 특허출원해야 하므로, 공동출원계약서 등을 통해 기여도 산정에 대한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여 명확히 할 수 있음.
-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출원하기로 연구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공동소유 비율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명시하는 조항을 산입할 수 있음.
  - 연구개발협약서 내에 주관·참여기관 간의 계약으로 기여율 산정기준을 연구비 활용 기준, 개발품목 기준 등으로 기여도 산정 기준을 명시할 수 있음.

※ 본 가이드라인은 [별첨]에 “공동출원 계약서” 및 “기여도 산정” 예시를 제공하여, 사업단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참조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IV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연구자  
개인명의  
특허출원 관련

✓ 관련 법령 및 규정	36
✓ 연구자 개인명의 특허 관련 이슈	40
✓ 연구개발기관의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	46



## ✓ 1.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개인 소유

- 국가연구개발성과는 관련 소유권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성과로써 특허의 개인명의 출원·등록이 정당한지 여부는 특허성과의 소유권 관련 법령과 규정, 기타 계약(직무발명 승계 계약 포함)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혁신법 제16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 승계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나, 연구개발기관이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연구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 舊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 양여가 가능(연구책임자에 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5항

-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 혁신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구자 소유 가능 조건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의 판단에 대해 아직 어떠한 기준이 정립된 바가 없음.

### 국가연구개발성과로써 특허 소유권 관련 규정

-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
- 「발명진흥법」은 발명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통상 실시권을 가지며,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직무발명규정(또는 직무발명 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

### 특허법 제33조

- 「특허법」 제33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특허를 발명한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함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발명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직무발명규정(또는 직무발명 승계 계약)에 따라 해당 발명은 연구기관에 승계
  - 직무발명인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진
  -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발명은 사용자에게 승계됨

IV. 연구자 개인명의 특허출원 관련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연구기관 유형별 직무발명 승계 주체 및 관련 규정

· 연구기관 유형별 직무발명 승계 소유 주체 및 관련 규정

주체	국가	지자체	국·공립대	사립대	출연연	기업 등
발명자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	교직원	교직원	연구자	임·직원
승계 소유	국가	지방자치 단체	전담조직 (기술이전법* 제11조 제1항)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법** 제25조 학교법인)	법인	법인
근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동법 제10조 제1항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자치단체의 조례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18조, 산학협력법 제25·27·35조 (대학별 자체 규정)	기술이전법 제24조,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18·26조, 산학협력법 제25·27·35조 (대학별 자체 규정)	기술이전법 제24조,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18·26조, (연구소 자체 규정)	계약, 근무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인명의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 관련 제반문제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으로 출원·등록된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는 규정위반 행위이며, 연구성과의 부적법한 활용 행위로 간주
  -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 검증 과정에서 적법한 개인명의 특허성과로 인정되지 않은 특허는 최종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에서 제외함
  -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성과는 소명 과정을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거나 적법한 권리자 명의로 환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됨

## ✓ 2. 연구자 개인명의 특허 관련 이슈

### 개인명의 특허성과 발생 원인

- 특허성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성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성과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인식 부족 및 국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 발생시 연구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되기도 함.
-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및 직원 간의 권리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개인명의 특허성과가 발생 여지 있음

### 개인명의 특허성과의 문제점 및 관리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는 정부 예산을 투자하여 창출된 공공자산의 성격을 가지나, 이를 개인이 소유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 특허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가 사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음
-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명의 특허성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연구기관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직무발명 관련 보상(기술료 배분) 참고 >

#### ○ 지식재산권 활용 수익에 대한 직무 발명의 연구자(과 제참여)에 대한 보상 배분 기준은?

- **비영리기관**의 경우, “국가R&D의 성과”에 대한 수익 배분은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르면 개발 연구자에게는 정부지분기술료(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의 50% 이상 지급할 것을 규정
  - \* 혁신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연구자 보상금 50% 이상
  - \*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구자 보상금 50% 이상
- **영리기관**의 경우, 수익 배분은 전문기관 납부를 제외한 수익금을 연구자 보상 등 위 비영리기관에서와 동일하게 배분대상을 정하나, 그 배분비율을 따로 정하지 아니함.
  - 발명진흥법 제15조 규정에서는 직무발명 연구개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정당한 보상”의 범위(배분비율 등)는 명확히 규정으로 정해진 바는 없음.
  - 따라서, 통상적인 직무발명의 보상금 범위에서 정당한 보상금으로 기관 내 직원 등과 협의 등을 토대로 형평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음

## < 참고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발명을 하여 사용자(영리·비영리)가 이를 승계한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여기서,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 보상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에 대한 보상이며,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등으로 기술료 수익을 발생한 경우의 수익배분은 별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 정하고 있다.

### 1.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 보상은 해당 발명이 국가연구개발성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의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직무발명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 직무발명의 보상형태 등의 기준, 지급방법 관련

-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고과 반영, 상벌체계 상의 보상 등 다양한 방식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사용자가 해당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금전적 보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해당 직무발명에 따른 수익창출시 종업원과의 분쟁발생 예방 필요, 대법원 판례 참조)
- \* 참고로 비영리기관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인사고과 반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영리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 직무발명의 보상형태 등의 기준, 지급방법 관련

#### ■ 직무발명 보상 관련 “사용자의 이익” 기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기술료 수익의 배분

혁신법 상의 기술료 배분 규정은 해당 직무발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국가R&D 성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등으로 기술료 수익 발생시 연구자 등에 배분하여야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 (제1항)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중 **영리기관**은 기술실시계약 등에 따른 기술료 수익 중 정부납부기술료를 제외한 수익에 대해 연구자, 기술료 기여자 등에 대한 보상금(법 제18조 제5항 제1호)을 지급해야 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기술료 배분에 대해 연구자 및 기여자에 대한 배분비율을 따로 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연구자 보상금에 대해 기관 내부의 합리적 보상기준을 정해 지급해야 할 것임.(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 기준과 부합되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 (제2항)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료 수익에 대해 **연구자 50% 이상(제1호), 기여자 10% 이상(제3호)**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소 결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연구자 보상은 “직무발명 보상금” 및 “기술료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명확한 내부기준을 정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 기관은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의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규정을 정립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 개인명의 특허성과의 적법한 사례 유형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 연구자 개인의 자유발명으로 귀속됨.
- 다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지식재산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관이 승계하지 않는다는 심의로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직무발명(지식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자 개인소유 예시 >

#### ○ 발명진흥법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등)

- 기관(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 기타 직무발명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위원 및 종업원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연구개발성과의 연구자 개인소유로 하는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승계를 포기한다는 의사결정으로 연구자 개인소유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미승계 필요성, 이유 등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자 개인소유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해당여부, 연구자 보상, 기타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음.(발명진흥법 제18조)

-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특허일지라도, 개인명의 특허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
- 다만, 아래 개인명의 특허성과의 적법 사례들은 예시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그 적법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대표적인 개인명의 특허성과의 적법 사례 유형

구분	사례 유형	적법 여부	확인 사항	증빙 자료
Case 1	• 연구기관 유형이 개인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출원	적법	-개인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사업자 여부 확인 (000-00-00000 가운데 두자리: 01~79,90~99)	개인사업자 등록증
Case 2	• 연구기관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할 권리를 포기하여 발명자이름으로 출원 (발명진흥법 제12조,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2항)	적법	- 직무발명 불승계 및 권리포기 문서 * 직무발명의 승계를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거 문서 - 개인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직무발명 불승계 및 권리포기 문서
Case 3	• 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해당 개인명으로 출원 (특허법 제37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16조의2)	적법	- 기술이전계약서 * 특허성과를 개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거 문서 - 종업원의 권리양수 의사표시 문서 * 연구기관이 공공연구기관이고, 권리포기로 인한 발명자 명의 출원인 경우(발명진흥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 종업원의 권리양수 의사표시 문서

### ✓ 3. 연구개발자의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

#### 연구개발기관의 관리 의무

- 연구개발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적극적인 연구활동 및 연구윤리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금지 의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연구개발기관의 관리 의무

- 참여연구원이 개발한 특허성과를 연구기관이 승계하는 내용의 연구기관 자체 직무발명규정을 마련
- 과제 신청 시, 신청기관에 요구되는 특허성과 귀속 관련 필요 서류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
- 연구개발기관의 직무발명규정 유무에 따른 승계동의서(승계확인서) 징구
  - 연구개발기관의 직무발명규정이 있으나 연구기관과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 결과를 공유하거나 참여연구원이 권리를 갖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특허성과를 연구기관에 승계시킨다는 참여연구원의 동의서(확인서) 또는 별도의 양도계약서를 사전에 징구
  - 직무발명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성과를 연구기관에 승계시킨다는 참여연구원의 동의서(확인서) 또는 별도의 양도계약서를 사전에 징구
- 연구개발기관 소속 이외 참여연구원이 있는 경우 승계동의서 징구
  - 연구기관이 타 기관 소속인 참여연구원을 정부 R&D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및 소속된 타 기관으로부터 특허성과를 연구기관에 승계시킨다는 참여연구원의 동의서 또는 별도의 양도계약서를 사전에 징구
  - 연구기관이 소속이 없는 참여연구원을 정부 R&D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으로부터 특허성과를 연구기관에 승계시킨다는 참여연구원의 동의서 또는 별도의 양도계약서를 사전에 징구

#### 연구개발기관의 개인명의 특허성과 사후 조치 방법

- 전문기관으로부터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성과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개인 명의자에게 연구기관 명의의 환원조치를 요구
- 명의환원 조치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허법」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조항(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하여 개인명의자의 특허출원 무효 및 명의 환원 조치 가능

\* (출원 중)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후 신규출원, 특허출원인 변경신고

\* (등록특허) 특허무효심판 후 신규출원,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 V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참고자료

✓ <b>[별첨1]</b> 공동출원계약서 및 기여도 산정 예시	50
✓ <b>[별첨2]</b> 국가R&D성과 귀속 관련 Q&A	55
✓ <b>[별첨3]</b> 기타 전문기관 관련 규정	58



## 별첨1 특허 공동출원계약서 및 기여도 예시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특허공동출원계약서」 및 「기여도 산정」에 대한 예시는 이를 참조하기 위한 예시일 뿐, 반드시 이에 따라 공동소유에 대한 협약 내지 기여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동출원 협약 내지 기여율을 산출하면 충분히 공동소유의 근거로 뒷받침 될 수 있음.

### ✓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예시

####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한국○○연구원(이하 “○○○○”라 한다)과 한국○○기술원(이하 “○○○○”이라 한다)은 2012년 4월 상호 체결한 공동연구계약서(이하 “연구협약서”라 한다.)에 의거하여 수행한 “과제명 : ○○○○ ○○○ 개발”(이하 “연구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결과 발생한 발명을 특허출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명칭 : ○○○○○○○○○”(“○○○○” 발명신 고번호 제○○○○○○○○호)의 산업재산권 및 상기 산업재산권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 출원, 분할출원, 계속출원, 일부계속 출원, 재심사출원 등을 말한다.

제2조 (권리의 지분) “연구협약서”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는 “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데 동의하며, 권리의 지분은 “공동연구계약서” 제1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거 본 연구성과인 연구 수행결과 발생한 발명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르며, 이는 [별지 1]과 같다.

제3조 (출원절차) ① “○○○○”은 “본 발명”의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및 등록된 경우의 권리유지보전에 관한 절차를 행한다.  
② “○○○○”은 “본 발명”의 특허출원이 등록되도록 노력하며 “○○○○”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4조 (실시) “○○○○” 또는 “○○○○”이 “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여 기술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술료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한다.

제5조 (실시허락) ① “○○○○” 또는 “○○○○”이 “본 발명”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를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

② “○○○○” 또는 “○○○○”이 “본 발명”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양도대가 및 실시대가의 배분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별도의 계약에서 정한다.

제6조 (제3자와의 분쟁) “○○○○”와 “○○○○”은 “본 발명”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특허 이의신청,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 대처하기로 한다.

제7조 (발명의 보상금) “○○○○”와 “○○○○”은 “본 발명”의 발명자에 대하여 각자의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각자에게 속하는 발명자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제8조 (해외 출원) ① “○○○○”와 “○○○○”은 “본 발명”에 대하여 국제출원이나 외국출원(이하 “해외출원”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원 국가를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1항의 협의에 의하여 “○○○○”와 “○○○○”이 공동으로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 해외출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본 계약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만이 해외출원 등을 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만이 해외출원 등을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고, 그 일방만이 해외출원 등의 출원인 및 등록권리자가 된다.

④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팩스, 기타의 방법으로 제1항의 협의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요구 3개월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만이 해외출원 등을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고, 그 일방만이 해외출원 등의 출원인 및 등록권리자가 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해외출원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외출원 등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 요청에 따른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 부담) “본 발명”과 관련하여 제3조 및 제6조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과 “○○○○”이 지분에 따라 공동부담한다.

제10조 (비밀 유지) “○○○○”와 “○○○○”은 “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출원 공개(등록공고를 포함한다.)된 경우 또는 제3자의 공표에 의하여 공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특허출원 이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해당하는 일에 종료한다.

- ① “본 발명”의 특허 출원이 취하 된 때
- ② “본 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

V. 참고자료

- ③ 일방당사자가 본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납입일까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때
- ④ “0000” 또는 “0000”가 본 특허의 특허권 지분을 포기한 때
- ⑤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제12조 (지분 포기 및 지분포기의 효과) ① 본 계약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비용을 납입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의 지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본 계약서는 지분 포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본 계약 제11조 3항 및 4항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 된 후, 지분을 보유한 상대방은 “본 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 허락하여 발생하는 수입 중 지분을 포기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협약서” 및 동계약서 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합의) ① “0000”와 “0000”는 본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계약의 규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선의와 신뢰로서 성실하게 처리한다.  
② 본 계약은 “0000”와 “0000”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0000”와 “0000”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한다.

0000년 0월 0일

아래의 연락처로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연락하며, 연락처 변경시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0000”  
○○○○○○○  
한국○○연구원  
원 장 ○○○ (인)

성 명 한국○○연구원 특허담당  
E-mail 0000@0000.○○.○○  
전 화 000-000-0000

“0000”  
○○○○○○○○○  
한국○○기술원  
대표이사 ○○○ (인)

성 명 ○○○  
E-mail 0000@0000.○○.○○  
전 화 000-000-0000

✓ **공동으로 창출한 성과에 대한 “기여도” 산정 예시**

- 아래 기여율 산출방식을 예시일 뿐, 다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기여율 산출이 가능한 경우 충분히 이를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음.

[예시 1]

**“000000 00000 0000” 기술의 공동발명 기여율**

□ 발명 명칭 : ○○○○○○○○○○○○

□ 발명에 대한 기여율 : 60 (한국○○연구원) : 40 (주식회사 ○○○○)

□ 기여율 내용

구 분	0000 연구원	주식회사 0000	비 고
연구개발 내용	* FGF11 연구 제안 * FGF11의 용도 발명 * FGF11의 mode of action 규명 * FGF11 상위조절자 제안 * FGF11의 상위조절자 규명	* FGF11 연구 제안 * FGF11 상위조절자 제안 * FGF11 클로닝 * FGF11 프로모터 클로닝	
본 발명에 대한 기여도	60%	40%	

본 연구개발 수행에서 공동발명에 대한 기여율은 상기와 같은 비율임을 확인합니다.

0000.0.0

[소 속] 한국○○연구원  
연구책임자  
[성 명] ○ ○ ○ (인)

[소 속] 주식회사 ○○○○  
연구책임자  
[성 명] ○ ○ ○ (인)

[예시 2]

“000000 00000 0000” 기술의 공동발명 기여율

발명 명칭 : 00000000000000

연구 기간 : 0000. 0 ~ 0000. 0

투입연구비 : 2억원 ( 1억원/0000 + 1억원/0000 )

연구비 부담비율 : 50 (0000) : 50 (0000)

부담내용

구분	0000	0000	비고
인건비	21,100,000원 (000 등 8명)	28,362,800원 (000 등 6명)	
연구장비 및 재료비	75,700,000원 (00, 000 제작 등)	46,313,100원 (EES, Solidworks 구입 등)	
연구활동비	3,200,000원 (정보자료,세미나,출장 등)	25,324,100원 (정보자료,세미나,출장 등)	
기타			
합계	100,000,000원	100,000,000원	

본 연구성과인 발명을 위한 연구수행에 투입된 연구비 부담비율은 상기와 같은 비율 (50 : 50)임을 확인합니다.

0000.0.0

[소 속] 한국00연구원  
연구책임자

[성 명] 0 0 0 (인)

[소 속] 한국00기술원  
연구책임자

[성 명] 0 0 0 (인)

별첨2 국가연구개발성과 귀속 관련 Q&A

Q1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연구협약서에서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5:5의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기로 정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독으로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개발기관의 단독소유이므로 단독 창출한 연구성과는 개발기관 단독 소유입니다. 다만,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 ▶ 따라서, 당해 연구협약서의 연구개발성과의 공동소유 협약은 **모든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공동소유한다는 협약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에 한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 공동 창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5:5 지분비율의 공동소유 협약에 따른 공유지분 관련, 혁신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호 협의에 따라 지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그 협의된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Q2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대학(비영리기관)과 참여연구개발기관인 기업(영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대학교수이긴 해도 실제 연구의 진행은 참여 기업이 과제의 70% 이상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나요?

- ▶ 혁신법 시행령 에 따르면,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여 공동소유 합니다. 다만, 연구과제를 참여기관이 70% 진행한 사항과는 별개로, 해당 **개별 연구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한 경우 **그 기여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본 사안에서 참여기업이 **해당 연구성과물 창출의 기여도** 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 기관은 공동소유 지분비율을 갖습니다.

V. 참고자료

Q3 전체 하나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4개의 과제가 협력을 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개발성과의 소유권은 공동출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서에 사전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는 기여도에 따라 지분비율을 가집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성과물을 공동소유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성과의 소유를 공동출원하기로 하는 경우 연구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분비율 협의는 충분히 형평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소유비율을 정하여 연구협약서 내에 반영**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구협약서의 연구결과의 귀속 조항에서 공동으로 창출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분비율로 할 것인지, 기여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정할 수 있습니다.**(별첨11 특히 공동출원 기여도 산정 예시 참조)

Q4. 참여기관이 연구개발 일부에 대해 제3기관에게 위탁한 경우, 본 위탁연구에 의해 위탁연구개발기관(제3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어느 기관의 소유인가요?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는 "주관기관" 소유**입니다.

여기서, "주관기관"의 의미는 연구과제 전체에 대한 주관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탁연구를 발주한 "발주처"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연구개발을 위탁한 발주처는 참여기관이므로 위탁연구의 주관기관으로써 참여기관이 연구성과물을 소유합니다.

다만, **위탁연구계약서 내에 충분히 위탁연구개발 성과의 귀속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과의 소유까지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Q5. 세부프로젝트 수행기관(참여)으로 연구책임자가 퇴사하여 과제를 수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 개발된 성과물인 제품 및 특허는 당사의 주력제품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과제를 수행할 사람이 없어 과제수행을 포기하고 주관기관이 잔여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에서 과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며 기존 개발된 성과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개발한 기관 소유입니다. 따라서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수행 중에 창출한 성과는 참여기관 소유**입니다.(주관기관에게 양도 불필요)

중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존에 소유한 성과물의 실시에 대해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이행 후, 참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기관의 계속적인 과제수행시 기존 성과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이 양도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협의에 따라 주관기관 등에 기술이전 등의 조치를 통해 양여 및 실시하여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은 기술이전 등과 함께 주관기관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실시 권한 등을 요청하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Cross Licence 등)

위 Q&A는 기존 사례를 들어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의 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첨3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련 규정 세부 내용**

• (과기부) 과학기술기본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b>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b>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단서 생략)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b>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b>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b>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b>5년</b>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과기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lt;국가연구개발혁신법&gt;</b> <b>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b> ① 연구개발성과는 <b>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b>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b>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b> 에 따라 <b>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b> 할 수 있다.  <b>&lt;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gt;</b> <b>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b>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b>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b>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b>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b>

• (과기부) 과학기술기본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b>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b>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b>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중략)...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중간 생략).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b>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b>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10의2와 같다. * [별표10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5조 제1항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4의2]와 동일 * [별표11]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 개인명의의 출원 환수하지 않음

V. 참고자료

• (과기부) 과학기술기본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b>…(중략)… ②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b>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b>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2문 이하 생략)</p> <p>⑦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b>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b>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b> 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p> <p>*[별표 4]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제48조제1항 관련)</p> <p>2. 사례별 기준</p> <p>보안윤리</p> <p>○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해당자 2년, 출연금 환수 면제</p>

• (산업부, 과기부,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26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b> ① 사업단장은 과제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p> <p>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를 적용한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32조(관련규정 준용)</b>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p>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35조(성과물의 귀속 등)</b>…(중략)…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드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b>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b>로 한다. (이하 생략)…(중략)…</p> <p>⑥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b> ①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별표2 [3]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수행기관 외에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p> <p>*[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p> <p>[2] 사례별 기준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p> <p>○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로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b>해당자 1년</b>, 출연금 환수 없음</p>

V. 참고자료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b>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b>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b>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b>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제품(試製品), 연구장비, 시설 등 유형적 성과</li> <li>2.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li> </ol>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b>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p> <p><b>[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b> <b>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b>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p> <p><b>*[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b> 5)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해당자 1년</p> <p><b>*[별표 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b> 8.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환수하지 않음</p>

• (중기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26조(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b> 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 노트 등 <b>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가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b>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29조(제재 등)</b> ① 전문가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p> <p><b>*[별표 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b></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p> <p>가) 개인사업자가 대표자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 참여제한 없음, 출연금 환수하지 않음</p> <p>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b>2년</b>, 출연금 환수하지 않음</p>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해당 없음)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b>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략)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생략) 또는 그 <b>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b> (생략)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생략)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p>

V.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24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b>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b>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b>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p>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생략)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3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과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6의2 및 별표7과 같다.</p> <p><b>제33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b>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7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li> <li>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li> <li>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li> </ol> <p>*[별표 6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33조의2제1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참여제한 기간</li> <li>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해당자 2년</li> </ol> <p>*[별표 7]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환수하지 않음</li> </ol>

•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36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b>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b>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b>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li> <li>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li> <li>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li> </ol> <p>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b>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b>1년</b></li> </ol>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45조(적용특례)</b> ③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에 따른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V.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45조(적용특례)</b> ③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에 따른다.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b>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b>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li> <li>2.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li> </ol> <p>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48조(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b> ① 장관은 별표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별표 6] 사유별 제재 기준</p> <p>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참여제한 2년, 출연금 환수하지 않음)</p>

V.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32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b>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b>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b>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p>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40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b> ① 과기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및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0조제1항 관련)</p> <p>2. 가.</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참여제한 2년, 사업비 환수하지 않음)</p>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45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등)</b>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b>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b> 개별 무형적 성과를 <b>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b>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62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b>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은 각각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와 공동관리규정 별표 5와 같다. 다만,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p>

•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b>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b>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b> 개별 무형적 성과를 <b>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b>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는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4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b> ①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원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p> <p>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참여제한 2년, 정부금 환수하지 않음)</p>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없음)</p> <p>[별지 3]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에서 규정 [표준협약서는 협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규정함]</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없음)</p> <p>[별지 3]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에서 규정 (표준협약서는 참여제한 1년으로 제재)</p>

V.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b> ②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b>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b> 개별 무형적 성과를 <b>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b>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p>③ <b>용역연구개발사업</b>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생명연구자원 등 <b>모든 성과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b>로 한다. 이 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권리의 출원, 양도, 대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49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b> ① 식약처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개발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9과 같다.</p> <p>*[별표9]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49조제1항 관련)</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된 경우(참여제한 2년, 사업비 환수하지 않음)</p>

• (경찰청)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30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b>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b>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b>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p>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경찰청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48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b>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된 경우: <b>1년</b> (사업비 환수하지 않음)</p>

•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38조(성과의 소유)</b> ②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b>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b> 개별 무형적 성과를 <b>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b>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42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b>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8과 같다.</p> <p>*[별표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2조제1항 관련)</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된 경우(참여제한 2년, 사업비 환수하지 않음)</p>

• (소방청)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등)</b></p> <p>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b>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b>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58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b>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청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된 경우, <b>참여제한 2년, 사업비 환수하지 않음</b></p>

V. 참고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7조(공동연구개발사업)</b> ① 해양조사분야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p> <p>② 공동연구개발사업은 자체연구개발사업에 준하여 확정, 관리 및 평가하되,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③ <b>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의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소유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b></p> <p><b>제8조(위탁연구개발사업)</b> ① 위탁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용역의 합리성, 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위탁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협약), 연구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p> <p>③ 위탁연구개발사업 수행성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은 국립해양조사원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p>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52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b>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b>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b> 개별 무형적 성과를 <b>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b>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li> <li>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li> <li>3. 농촌진흥청장이 주관연구기관(협동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li> </ol>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6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b>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p> <p>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p>
---------------------------	---

•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p><b>제38조(성과의 소유)</b> ②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b>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b> 개별 무형적 성과를 <b>개발한 참여기관의 단독 소유</b>로 하고, 복수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p>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p><b>제5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b> ① 산림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임직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9와 같다.</p> <p>*[별표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53조제1항 관련)</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참여제한 <b>2년</b>, 사업비 환수하지 않음)</p>

V. 참고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27조(결과물의 귀속 등)</b> ①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b>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의 소유를 원칙</b>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b>제28조(지원사업 참여 제재 등)</b>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 제외) *[별표 2]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 과제 제재등급 (제16조, 제28조, 제29조 관련)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 면제, 사업비 환수하지 않음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이내, 사업비 환수하지 않음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b>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 등 일체의 권리는 <b>국가기록원의 소유</b> 로 한다. 1.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취득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만, 특허기술 실시에 의한 기술료 징수 등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이 소유한다. 2. 특허출원경비는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고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기록원이 부담한다.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b>제44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b> ① 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다.

V. 참고자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38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b>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b>연구원의 소유</b> 로 한다.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제4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① 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별표 3]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연구개발비 환수 세부기준 1. 참여제한 적용기준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b>2년, 연구개발비 환수하지 않음</b>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28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b>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의 귀속 등은 「 <b>국유재산법</b> 」 제65조의12에 따른다.  <b>국유재산법</b> <b>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b>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 등을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11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b>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제품 및 <b>지적재산권</b> 보고서의 판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로 하나, 우정업무에 활용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우정사업본부와 주관기관의 <b>공동소유</b> 로 할 수 있다. ② 기타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2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b> ① 기술개발사업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b>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b> 한다. ②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없음)

•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없음) 제41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없음) 제41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V.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구분	주요 내용
R&D 성과 소유권 귀속 관련 규정	<b>제4조(권리의 시 승계)</b>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중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R&D 성과 부적법 제재 관련 규정	(해당 없음)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발행일 2021년 4월

발행처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발행인 사업화지원본부 사업화지원팀\_특허전략TFT

편집인 윤전희 특허전략TFT 팀장/CPO(특허전담관)

디자인·인쇄  팬디자인 (02-6713-2785)

주 소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회관 5층

전 화 02-6328-0332

팩 스 02-6328-0357

홈페이지 <http://www.kmdf.org>

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